



삼일회계법인

COP30 Takeaways

November 2025



COP30 Takeaways

전 세계 194개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약 5만 6천 명 이상이 참석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0)가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COP28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했습니다.

90개 이상의 의제가 논의된 COP30은 탄소 관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었으며, 기업에게 탄소 관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30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I. COP의 중요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UNFCCC에 가입한 198개국은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를 개최합니다. COP는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각국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조치를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COP에서 채택된 합의안은 모든 참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COP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합의가 각국의 환경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 전반과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COP21: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의 시작점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번 세기 후반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를 설정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UNFCCC에 제출하고 이를 법제화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별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인 RE100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망 전반에 재생에너지 조달 요구가 강화되며 에너지 시장에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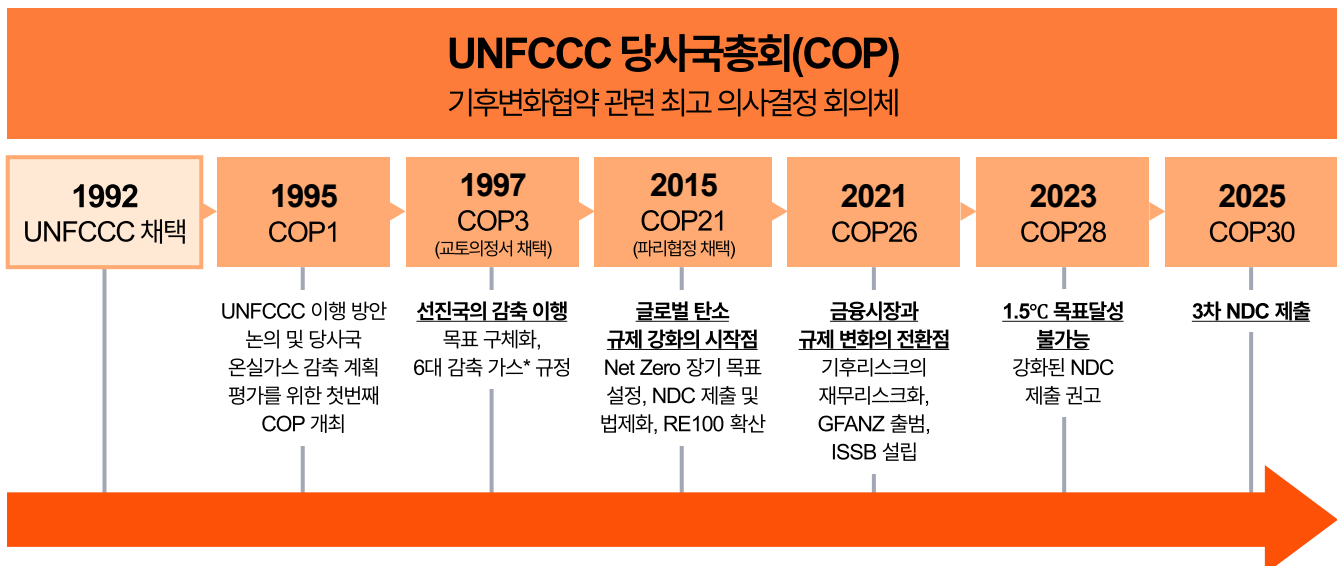
2

COP26: 금융시장과 규제 변화의 전환점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은 기후 리스크를 실질적 재무 리스크로 간주하는 글로벌 전환점이자, 금융 부문의 넷제로 전환, ESG 공시 기준 마련의 초석, 그리고 투자자 요구 강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이하 GFANZ) 출범을 통해 450개 금융기관(총 자산 약 130조 달러)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약속했고, 금융기관이 투자·대출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집약적 산업을 줄이고 기후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설립을 발표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기관투자자 그룹(Climate Action 100+, PRI 등)은 기업들에게 기후 리스크 공시 강화와 탈탄소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요구가 권고 수준에 머물렀지만, COP26 이후 GFANZ와 글로벌 규제 흐름이 결합하면서 시장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당사국 총회



II. COP30의 주요 의제 및 결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악화에 대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으며, 과학계는 심각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이하 WMO)는 이번 총회에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8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42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농도 상승과 해양 열 함량 증가 등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기여로 예상 지구 온도 상승폭이 4°C 이상에서 1.9~2.6°C로 낮아졌으나, 셀레스트 사울로 (Celeste Saulo) WMO 사무총장은 “향후 몇 년간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협정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감축·적응·재원·손실과 피해·투명성·정의로운 전환·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7대 분야에서 90개 이상의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가진 사항은 3차 NDC 제출, 국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합의, 기후 재원,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 등이었습니다. COP30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 가운데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3차 NDC 제출

파리협정 이후 각 당사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은 NDC를 제출해왔으며, 이후 5년마다 목표를 갱신하고 강화해 UN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COP28에서 파리협정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 현재 NDC로는 1.5°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COP28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¹의 과학적 기준을 반영해 2025년 3차 NDC 갱신 시 2035년 목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가 운영하는 국가별 기후데이터 플랫폼인 Climate Watch의 공식 집계(11월18일 기준)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을 포함한 총 118개국이 3차 NDC를 제출²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 동 보고서는 1.5°C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2035년까지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중간 경로 제시하며 COP28 GST의 권고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했다.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Tracker | 2025 NDCs | NDCs 3.0 | Climate Watch](#)

(참고) 주요 국가별 NDC 현황

구분	2015/2016 (1차)	2020/2021 (2차 갱신)	2025 (3차 갱신)
한국 ³	2030년까지 BAU ⁴ 대비 37% 감축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미국 ⁵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
EU ⁶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2035년까지 55.35%~72.5% 감축
일본 ⁷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캐나다 ⁸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 ⁹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 유지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2~70% 감축
중국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경 배출 정점 도달 • 2030년까지 GDP당 배출량 2005년 대비 60~65%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이전 배출 정점 도달,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배출량 6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대비 7%~10% 감축

3 UNFCCC, [211223 The Republic of Korea's Enhanced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11227 editorial change.pdf](#);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4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처럼 과학적 시나리오가 절대량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BAU(추가적인 감축 조치가 없는 경우 예상되는 배출전망치)방식에서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했다.

5 UNFCCC, [U.S.A. First NDC Submission.pdf](#); Microsoft Word - United States NDC April 21 2021 Final.docx;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Sets 2035 Climate Target Aimed at Creating Good-Paying Union Jobs, Reducing Costs for All Americans, and Securing U.S. Leadership in the Clean Energy Economy of the Future | The White House](#),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3차 NDC는 현재 국제적으로 유효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가 완료(26년 1월)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

6 UNFCCC, [DK-2025-11-05 EU NDC.pdf](#); European Council, [Paris Agreement: the EU submits its updated NDC with an indicative target for 2035 to the UN ahead of COP30 - Consilium](#)

7 UNFCCC, [SUBMISSION OF JAPAN'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PDF](#); [Japans 2035-2040 NDC.pdf](#)

8 UNFCCC, [Canada First NDC - Revised submission](#); Microsoft Word - Canada's Enhanced NDC Submission_FINAL EN (Aug. 16).docx; [Canada's 203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_ENc.pdf](#)

9 UNFCCC, [Australi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o a new Climate Change Agreement - August 2015.pdf](#); [Australi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Update October 2021 WEB.pdf](#); [Australias Second NDC.pdf](#)

10 Climate Action Tracker, [China | Climate Action Tracker](#); UNFCCC, [2035年中国国家自主贡献报告.pdf](#)

COP30에서 한국은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이하 PPCA)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PPCA는 2017년 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 연합체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파리협정의 1.5°C 목표 달성을 위해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기타 국가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가입을 통해 다음을 선언했습니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온실가스 저감 장치 없는 기존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 현재 운영 중인 61기 중 40기는 2040년까지 폐쇄, 나머지 21기는 경제성·환경성 검토 후 내년까지 구체적 계획 확정

3

파리협정 제6.2조(Cooperative Approaches)

파리협정에서 논의가 시작된 제6조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그 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중 제6.2조는 국가 간 탄소감축량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며,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이하 ITMO)를 각국 NDC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보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COP29에서는 감축실적 거래 승인 절차와 보고서 불일치 처리 방안이 합의되어 안정적인 거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COP30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포괄적 지침이 도입되었습니다.

-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TER) 결과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26년 11월 SB65(제65차 과학기술자문기구 회의)에서는 TER 결과를 주제로 비공식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당사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등록부 및 추가 등록부 서비스 절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TER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inconsistency)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기술지원이 구체적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6.2조 참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제6.4조는 UN 감독 하의 글로벌 탄소시장 메커니즘(the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PACM)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제6.2조와 마찬가지로 파리협정 때부터 협의가 진행됐으며, COP29에서는 1)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dy)의 역할, 2) 프로젝트의 탄소감축량 계산·검증 방식 표준 마련, 그리고 3)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¹¹ 프로젝트를 제6.4조 체계로 이전할 조건과 절차 등이 확정됐습니다.

COP30에서는 제6.4조와 관련해 탄소감축 메커니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을 위한 신규 방법론이 채택되어 폐기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탄소감축사업의 품질 보증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를 위해 5건의 핵심 표준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선(baseline) 설정,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 누출(leakage) 조정, 억제된 수요(suppressed demand) 반영, 비영구성(non-permanence) 및 감축 역전(reversal) 방지 등이 포함됩니다.
- 기존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운영되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원활한 제도 전환을 위해 완료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진행 중인 CDM 사업들이 새로운 파리협정 체계로 안정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탄소시장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1997)에서 만든 탄소시장 메커니즘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감축량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크레딧으로 받아 자국 목표에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무결성 논란, 중복 계산 위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로 파리협정 이후 Article 6.4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었으며, COP29에서 CDM 프로젝트 전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III. 기업 고려 사항

파리협정 채택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국제사회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실제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체화하며 글로벌 탄소거래 체계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COP30에서 제시된 '글로벌 무치랑(Global Mutirão)' 개념은 1.5°C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공동 작업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의 강화된 3차 NDC, 탈석탄동맹 가입, 그리고 국제 탄소시장 규칙 정비는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글로벌 무치랑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강화되는 감축 의무는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관리 역량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후행동의 가속화와 대규모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기업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글로벌 기후 대응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NDC 강화에 따른 기업의 탄소 관리 로드맵 구축

3차 NDC 목표(한국: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따라, 기업은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제시한 전력·수송·건물·산업별 감축 목표와 연계된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체계적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
- 국제 표준(GHG Protocol, ISO 14064)에 기반한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강화
- 배출 추적·보고·상응조정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도입

2

국제 탄소시장 규칙 이해 및 시장 기회 포착

국제 탄소시장의 운영 규칙이 구체화되면서, 기업들은 이제 명확해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ITMO 거래를 비롯한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TMO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 크레딧을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새로운 수익원 확보라는 기회를 선제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규칙이 정비되고 ITMO 거래가 가능해지면, 기업은 감축 실적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초과 감축분을 거래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NDC 강화로 인한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 조달 전략 재설계

한국의 PPA 가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이 확정되면서, 기업은 전력 조달 구조 변화와 비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믹스 변화: 석탄 비중 축소 → 재생에너지·LNG·수소 의존도 증가
- 전력요금 변동 가능성: 발전원 전환 비용이 전력요금에 반영될 가능성
- 좌초자산 리스크: 석탄 기반 사업 또는 관련 공급망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

이에 따라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PA(전력구매계약),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활용, 자체 발전소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정 전기화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저탄소 연료 등 차세대 에너지원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믹스 변화와 비용 리스크를 완화하고, 글로벌 고객사의 RE100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Sustainability Platform

박 경 상 Partner

Assurance

kyoungsang.park@pwc.com

Client & Industries

장 은 영 Director

celia.e.jang@pwc.com

윤 이 나 Manager

ena.yun@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11W-RP-138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